

#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「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비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.4.30.(금), 17: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4월 19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## 1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이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화학제품안전법”) 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·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

## 2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·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, 안전기준을 확인·신고하여 '20.5.1부터 '21.3.31까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
  - (자격요건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- (제한사항) 최근 3년('18~'20) 안전·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(회수명령) 받은 기업, 최근 3년('18~'20)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,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권리·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, 휴·폐업기업 및 국제·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

○ 지원내용 :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·검사 비용 지원

- 제품 당 시험·검사비(부가세 제외)의 70% 이내,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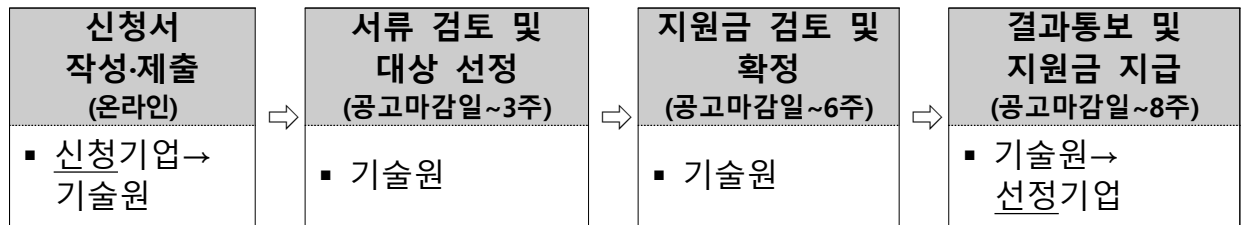
※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

※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

○ 우대사항 :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,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, 신규관리품목\* 우선 지원

\* [환경부 고시 제2020-117호, 부칙 제2조]에 따른 인주,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, 공연용 포그액

○ 지원방법 :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(사후환급방식)



※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환경부고시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, 신고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

### 3 신청방법

○ 공고·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4.30(금), 17:00 까지(시스템 '제출완료' 기준)

○ 제출방법 : 온라인 신청서 작성·제출

① 「화학제품관리시스템(<http://chemp.me.go.kr>)」 로그인

※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(ID/PW)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

② 「전자민원」 → 「중소기업 지원 사업」 → 「시험검사비 지원 신청」 →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

③ 접수마감일까지 '제출' 버튼 클릭하여야 함('임시저장'은 미접수로 분류됨)

※ 접수기간 내 '제출'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·보완 및 제출 불가

○ 제출서류

- ① 시험·검사비 지원 신청서(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·제출)
- ②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<http://sminfo.mss.go.kr> 에서 발급)
- ③ 국세 완납증명서(국세청 홈택스, <http://www.hometax.go.kr> 에서 발급)
-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(정부24, <http://www.gov.kr> 에서 발급)  
※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
-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(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)
- ⑥ 시험·검사 수수료 영수증(세금계산서, 카드매출전표 등)
- ⑦ 통장 사본(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)  
※ 예금주명은 법인(기업)명 또는 대표자(사업주)명과 동일해야 함
-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(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)
-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(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)
-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(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)
-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·제출)

○ 문의처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(02-2284-1835, [hsjung@keiti.re.kr](mailto:hsjung@keiti.re.kr))

## 4 참고사항

-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,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
-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

- 첨부 1. 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비 지원 신청서(양식) 1부.  
2. 지원 사업 신청·접수 FAQ 1부. 끝.

※ 웹페이지입력

(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)

### 1. 기업 일반현황

개인정보 이용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안함		
환경법규 위반여부	※ 최근 3년('18~20년) 위반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행정처분 여부	※ 최근 3년('18~20년) 화수명령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기업명	※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 기재	대표자	※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기재	
사업자등록번호	- -	기관설립일	년 월 일	
기업규모	※ 중소기업확인서에서 확인(확인서 상 '소기업(소상공인)'인 경우 '소상공인'에 해당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상공인(1인기업 포함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업			
업종	※ 사업자등록증 상의 '업태·종목' 중 가장 위 업태·종목(주업종) 기재	상시근로자 수	(사업주 제외) 명	
주생산품		주수입품		
주소	본사 (우편번호: )	전화: - -	팩스: - -	
	공장 (우편번호: )	전화: - -	팩스: - -	
담당자 (※ 신청인(대표))	부서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:	전화: - -	팩스: - -	
	휴대전화: - -	이메일:		
	부서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:	전화: - -	팩스: - -	
실무자 (※ 행정담당자)	휴대전화: - -	이메일:		
	2021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
		년	월	일
신청인(대표)		(서명 또는 인)		
<b>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</b> 귀하				
첨부서류 (업로드)	① 중소기업 확인서 ② 국세 완납증명서(납세증명서) ③ 지방세 완납증명서(납세증명서) ④ 시험의뢰비용 견적서 ⑤ 시험·검사 수수료 영수증 ⑥ 통장 사본			

2. 신청제품 현황 (※ 신청제품별 정보 기재, 일부 항목 자동연계)

신청품목	총 ( ) 종	신청제품 수	총 ( ) 개
------	---------	--------	---------

신청제품①					
신고증명서 발급일	년	월	일	신고번호	제 호
제품명					
분 류			품 목		
제 형			용 도		
용도·특성*	※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, 용량, 기능, 특징 등				
활 용 성*	※ 제품의 시장성, 활용성 등 기대효과				
생산/수입현황*	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 중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중	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 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계획	
시험·검사일자	년	월	일	시험·검사기관	
시험검사비용(원)* (※ 부가세제외)			원	* 자동 연계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력 필요	

신청제품②					
신고증명서 발급일	년	월	일	신고번호	제 호
제품명					
분 류			품 목		
제 형			용 도		
용도·특성*	※ 제품의 구체적인 용도, 용량, 기능, 특징 등				
활 용 성*	※ 제품의 시장성, 활용성 등 기대효과				
생산/수입현황*	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 중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중	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 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계획	
시험·검사일자	년	월	일	시험·검사기관	
시험검사비용(원)* (※ 부가세제외)			원	* 자동 연계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력 필요	

**1. 생활화학제품 시험·검사비 지원 사업이란?**

- 중소기업에게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·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**2. 지원금 산정 기준은?**

- 신청제품 당 시험·검사 비용(부가세 제외)의 **최대 70% 이내로**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 선정규모 및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, 품목별 지원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**(예시)** 시험·검사비 공급가액 30만원, 부가세 3만원으로 총 33만원인 경우, 시험·검사비 공급가액 30만원의 70%인 최대 21만원을 지원합니다.

-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, 여러 품목을 취급하는 일부 기업에 지원금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, 기업 당 지원 한도는 **연간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하고** 있습니다.
- 기업 당 최대 지원 한도의 경우 신청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**(예시1)** 제품 당 시험·검사 금액이 30만원인(공급가액 기준) 제품을 총 10개 신청할 경우,

- ☞ 지원금 산정금액은 210만원(30만원/개\*70%\*10개 제품)이나, 기업 당 최대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**연간 최대 150만원까지** 지원합니다.
- ☞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**(예시2)** 제품 당 시험·검사 금액이 30만원인(공급가액 기준) 제품을 총 5개 신청할 경우,

- ☞ 지원금 산정금액은 총 105만원(30만원/개\*70%\*5개 제품)으로, 기업 당 최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**최대 105만원까지** 지원합니다.

**3.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, 살생물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되나요?**

○ 아니오. 세정제,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1개 품목만 지원 대상입니다.

※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('20.6. 지정·고시)

1. 세정제 <sup>1)</sup>	14. 물체염색제 <sup>1)</sup>	27.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<sup>2)</sup>
2. 제거제 <sup>1)</sup>	15. 물체도색제 <sup>1)</sup>	28. 기피제 <sup>1)</sup>
3. 세탁세제 <sup>1)</sup>	16. 자동차용 워셔액 <sup>1)</sup>	29. 보건용 구제·방자·유인살충제 <sup>2)</sup>
4. 표백제 <sup>1)</sup>	17. 자동차용 부동액 <sup>1)</sup>	30. 보건용 기피제 <sup>2)</sup>
5. 섬유유연제 <sup>1)</sup>	18. 인쇄용 잉크·토너 <sup>1)</sup>	31.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<sup>2)</sup>
6. 광택 코팅제 <sup>1)</sup>	19. 인주 <sup>1)</sup>	32.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<sup>2)</sup>
7. 특수목적코팅제 <sup>1)</sup>	20.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<sup>1)</sup>	33. 목재용 보존제 <sup>1)</sup>
8. 녹 방지제 <sup>1)</sup>	21. 미용 접착제 <sup>1)</sup>	34. 필터형 보존처리제 <sup>1)</sup>
9. 다림질보조제 <sup>1)</sup>	22. 문신용 염료 <sup>1)</sup>	35. 초 <sup>1)</sup>
10. 접착제 <sup>1)</sup>	23. 살균제 <sup>1)</sup>	36. 습기제거제 <sup>1)</sup>
11. 접합제 <sup>1)</sup>	24. 살조제 <sup>1)</sup>	37. 인공 눈 스프레이 <sup>1)</sup>
12. 방향제 <sup>1)</sup>	25. 가슴기용 향균·소독제제 <sup>2)</sup>	38. 공연용 포그액 <sup>1)</sup>
13. 탈취제 <sup>1)</sup>	26. 감염병 예방용 살균·소독제제 <sup>2)</sup>	39. 가슴기용 생활화학제품 <sup>2)</sup>

- 1)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- 2)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**4. ① 시험·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도 신청 가능한가요?**

② 총 2개의 제품 중 1개는 신고증명서가 발급되었고, 1개는 수정·보완 중에 있습니다. 이 경우 신고증명서 발급 전 제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?

○ 시험·검사가 진행 중인 제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○ '20년도 지원 사업에서 '20년 4월 30일까지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·검사비를 지원하였고, '21년도의 경우 '20년도 5월 1일부터 '21년 3월 31일 기간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.

5. 과거 동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가요?

-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선정 과정에서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.

6. 올해 하반기에도 공고가 있을 예정인가요?

- 상반기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, 상반기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라 하반기 공고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.

7. ① 간이사업자도 지원이 되나요?

- ② 간이사업자를 올해 등록해서 과세조회가 안됩니다.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?
- ③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려고하니 간이사업자인 관계로 4대보험완납증 발급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나요?

- 간이사업자(간이과세자)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, 중소기업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납세증명서는 그 시기에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, 과세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신생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발급 사이트를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4대보험완납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8.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?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<http://sminfo.mss.go.kr>)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- 홈페이지 접속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발급 관련 문의처 :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☎02-3215-2674)

## 9. 납세증명서(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) 발급 방법은?

- 국세 완납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(<http://www.hometax.go.kr>)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- 홈페이지 접속 후, 민원증명 > '민원증명발급'란에 납세증명서(국세 완납증명)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,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.
  - 발급 관련 문의처 : 국세상담센터(☎126)
-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정부24(<http://www.gov.kr>)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  - 홈페이지 접속 후,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발급 관련 문의처 : 정부24(☎1588-2188)

## 10. 지방세·국세 완납증명서(납세증명서)를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한가요?

- 납부내역증명(납세사실증명)은 납세기록에 대한 증명서류로,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

### 11. 견적서를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한가요?

- 접수증은 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 및 항목별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견적서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, 견적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견적서 앞면(표지)가 아닌 전체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 제품의 영수증 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2. 영수증은 어떤 종류가 인정되나요?

- ①세금계산서(공급자에 시험기관명과 금액 명시),  
②카드영수증(가맹점명에 시험기관명과 금액 명시, 카드사 발급 카드전표 가능),  
③계좌이체확인증(받는사람에 시험검사기관명과 금액 명시,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) 중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또한, 신청 제품의 영수증 금액은 견적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. 여러 제품을 통합하여 결제하였으나, 일부 제품에 한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3. 신청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?

- 주 수입품, 주 생산품, 부서(1인 기업 등의 이유) 등 작성 시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'해당 없음'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

### 14. 지원금이 지급되기 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?

- 공고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.

## 15. 지원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나요?

-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신청 당시 작성한 계좌정보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따라서,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16. 지원 대상 선정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지원 대상 선정여부는 최종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 단계에서 신청서 내에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안내드립니다. 신청 시 담당자 및 실무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